

평택시 미군 위안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토론회

○일시: 2018년 7월 24일(화) 오후 2시

○장소: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

○주최: (사)평택시민재단 · (사)햇살사회복지회

○후원: 재단법인 동천

평택시 미군 위안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토론회

“한평생을 살아도
말 못하는 게 있습니다
모란이
그 깊은 입술로 다 말하지 않듯
바다가 해일로
속을 다 드러내 보일 때도
해초 그 깊은 곳은
하나도 쏟아 놓지 않듯
사랑의 새벽과
그믐밤에 대해 말 안하는 게 있습니다
한평생을 살았어도
저 혼자 노을 속으로 가지고 가는
아리고 아픈
이야기들 하나씩 있습니다“
-도종환 <사연>-

- 일시: 2018년 7월 24일(화) 오후 2시
- 장소: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
- 주최: (사)평택시민재단 · (사)햇살사회복지회
- 후원: 재단법인 동천

(가칭)평택시 미군위안부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토론회

평택 미군 기지촌 할머니들이 차별과 아픔을 견뎌내며 생긴 가슴 속 응어리를 풀어내면서 삶의 주인공으로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 개 요

- 일 시: 2018년 7월 24일(화) 오후 2시 ~ 4시
- 장 소: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
- 주 최: (사)평택시민재단, (사)햇살사회복지회
- 주 관: (사)평택시민재단 031-658-7633
- 후 원: 재단법인 동천

□ 순 서

시 간	소요시간(분)	내 용	
~14:00		- 토론회 참가 등록	
14:00~14:05	5	- 개회	
14:05~14:20	15	- 인사말(우순덕/(사)햇살사회복지회 대표) - 축사 *정장선/평택시장 *권영화/평택시의회 의장	
14:20~15:00	40	주제발표	- 이나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미군 기지촌 위안부 삶과 인권” - 이은우/(사)평택시민재단 이사장 “평택시 미군위안부 지원조례 필요성과 방향”
15:00~15:30	30	토 론	- 김숙자/미군기지촌 위안부 할머니 - 유승영/평택시의회 의원 - 최치선/평택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상임위원 - 최미정/경기여성연대 정책위원장
15:30~15:50	20	- 방청객 질문 및 답변	
15:50~16:00	10	- 정리발언 및 폐회	

- 개회식 사회: 이정숙/기지촌여성(미군위안부) 지원조례 연구모임 연구위원
- 토론회 좌장: 박성복/평택시사신문 사장

□ 목 차 □

○인사말

우순덕 (사)햇살사회복지회 대표 -----p6

○축사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 -----p9

○주제발표

미군 기지촌 위안부 삶과 인권 -----p10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평택시 미군위안부 지원조례 필요성과 방향 -----p31

이은우 사단법인 평택시민재단 이사장

○당사자발언

김숙자(평택 미군 기지촌 위안부 출신 할머니) -----p49

○참고자료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주요 내용 요약본 -----p55

경기도 미군 위안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p65

[인사말]

이제라도 (가칭) 「미군 ‘위안부’ 들을 위한 조례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우순덕 대표(사단법인 햇살사회복지회)

2002년 경기도 평택시 안정리에 반지하방을 빌려 ‘햇살사회복지회’를 열고
기지촌 할머니들과 처음 만나 매주 화요일 공동식사도 하고 정서함양 모임도
한 지 어느덧 16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할머니들을 위해 필요한 일이 무
엇일까 생각하며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려고 했다.

2008년에는 <경기도 기지촌 여성노인 실태조사> 및 정책 토론회를 하였고,
2012년부터는 연출가 노지향 선생이 우리 할머니들이 직접 연극배우가 되어 무
대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우리 할머니들이 주인공이 되어 직접 연기한
연극 <숙자 이야기>는 2013년 서울변방연극제 개막작에 초청되는 등 모두 4번이
나 공연하였다.

대학로의 연극 배우들이 우리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재현하기도 했다. 연극 <일
곱집매>(작: 이양구, 연출: 문삼화)는 2013년 서울 대학로에서 두 달 동안 공연
되면서 우리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안정리 바깥 세상에 알렸다. 그해 가을에는
평화박물관 SPACE 99(서울 종로구)에서 한 달 동안 사진 전시회(이성주·서현경
작)도 열렸다. 2015년에는 썬샤인 (SUNSHINE) 합창공연(강사: 유성숙 선생)도
했다.

2016년 가을에는 우리 할머니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로 뮤지컬을 만들었다. 2016
년 10월 31일에 평택의 기쁜교회에서 초연하였던 뮤지컬 『그대 있는 곳까지』
(유성숙 음악감독, 이양구 구성·연출)는 2017년 9월 12일에 서울 대방역 여성플
라자에서 재공연 되었다. 400명이 넘는 관객들이 객석을 가득 채웠다. 햇살 할
머니들의 뮤지컬 연습과정이 KBS 스페셜 전쟁과 여성 3부에서 보도 되었고(8.24)
김숙자 할머니의 인터뷰는 jtbc 소셜라이브에 방송을 타고 나갔다. 양공주·양색
시라고 질시받던 우리 할머니들을 사람들은 우리 안의 ‘위안부’ 라고 불렀다.
우리 할머니들이 양공주에서 ‘위안부’ 로 불리기까지 오는 시간은 참으로 길고
도 멀었다.

우리 할머니들을 양공주 대신 ‘위안부’ 라고 다시 불러준 것은 대한민국 법원이었다. 햇살은 한국 내 기지촌 할머니 122명과 기지촌여성인권연대,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30여 명), 두레방, 새움터 외 타 단체와 연대하여 2014. 6. 25. <한국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대한민국 법원은 1심 판결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기지촌을 특정지역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면서 특구관광시설 업체(미군위안시설)을 지정하여 면세 주류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미군 등으로 한미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1997년부터는 기지촌 특정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한 사실을 명확히 하면서, 낙검수용소(몽키하우스)에 격리 수용하여 성병을 치료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대한민국 2심 법원은 2018. 2. 8. 한 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기지촌 위안부의 인격 자체를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고 판결했다. 대한민국이 미군 ‘위안부’ 를 한미동맹과 외화획득을 위한 도구로 운영, 관리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고등법원은 우리 할머니들이 젊은 날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 수용돼 부적절한 치료를 받고, 성매매 정당화·조장 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는 물론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한 마디로 고등법원은 한미 군사동맹과 외화 벌이를 위해서 우리 할머니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고 본 것이다.

여러 매체(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미군 기지촌 ‘위안부’ 국가 배상 청구 항소심 승소, 차혜령 변호사, 2018. 2. 8/ 한겨레, 국가책임 무겁게 물은 '미군 기지촌 성매매' 판결, 2018.2.9 /평택시민신문, “국가가 미군 기지촌 운영하고 성매매 정당화했다”, 2018.2.21/ 한국일보, ‘국가가 관리한 성매매였다’ , 미군 기지촌 여성들, 2017.10.28. / KBS 스페셜 전쟁과 여성 3부_그녀의 꿈, 2017. 8.24 / JTBC ‘잇힌 현대사’ 미군 기지촌 할머니들의 자전적 무대, 2017. 9.17 / KBS 추적 60분 미군 위안부의 진실, 2017.6.17./ SBS 그것이 알고싶다 _ 몽키하우스와 비밀의 방 2015. 11. 7 / 한겨레 21, 695호 “국가가 포주였다” pp.18-29, 2008.1.29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기지촌 할머니, 누가 그들에게 낙인을 찍었나?’ 2006.10.21 / KBS 2 TV 시사투나잇 2006.5.4 / MBC 2580시사매거진: ‘기지촌 여성’ , 2005. 7.10 /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기지촌 역사’ , 2003. 2.9)에서도 보도 되었듯이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사회로부터 내몰려 홀로 죽어가는 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비참한 삶은 이 들만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호소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박태균 교수는 “근본적인 문제는 강제적이냐 아니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구조를 만들어낸 국가와 사회에 보다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했다.(박태균, “국가와 사회도 책임을 져야,” 햇살소식지 6호, 2007.10.30, 3-4쪽)

본회 5주년 행사시(2007.6.5)에 참석한 김기조 박사는(정치외교학 / 1973년 한-미 군사위원회에서 한국 쪽 위원장) “당시 미국이 기지촌 여성들의 성병관리 등을 요구했기 때문에 수십 차례 평택, 의정부 등 미군기지 근처 클럽을 답사했다. 당시 대통령이 특별자금으로 직접 기지촌 정화사업비용을 내려 보내기도 했다. 당연히 국가와 지자체도 여러분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 고 우리 안정리 기지촌 할머니들 앞에서 증언 한마디 있다.

한미 동맹 관계 속에서 기지촌 여성의 성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연구했던 캐서린 H. S. 문은 『동맹속의 섹스』에서 한때 기지촌 여성들이 기지촌에서 벌어들인 외화 수입은 국민총생산의 25%를 차지했고, 평택 지역 경제의 60%이상을 부양했다고 한다.

한때 민간외교관 달러벌이 역군이라 칭송받으며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일했던 젊은 기지촌여성들은 지금은 늙고 병들어 외롭게 쪽방에서 살아가고 있다. 한때 달러벌이 도구로 마음껏 써먹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그들의 삶을 돌보아야 할 때이다. 이미 너무 늦었지만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조금이라도 더는 일일 것이다. 당장 급한 대로 우리 할머니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평택시가 먼저 나서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우리 할머니들이 민족적 망각과 역사적 왜곡 속에서 방치되었을 뿐, 아무런 대책이 없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다. 우리 할머니들과 동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세미하고 따스한 관심으로 우리 할머니들을 지원 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제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리고 오늘의 (가칭) <평택시 미군 위안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 토론회>를 위해서 함께 해주신 이은우 대표님(평택시민재단), 동천재단법인(차한성 이사장), 정장선 평택시장님,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님, 박성복 평택시사신문 사장님, 이나영 교수님 (중앙대학교), 유승영 의원님(평택시의회), 최치선 향토사연구소 상임위원님, 최미정 경기여성연대정책위원장님, 조례연구위원의 이정숙 센터장님 외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특별히 뽕뽕 싸매었던 아픈 이야기를 해주시는 우리 속자 할머니에게도 감사드린다.
고맙습니다.

[축사]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의장 권영화입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평택시 미군위안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시민토론회』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택의 아픈 역사인 기지촌 할머니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불철주야 뛰고 계신 평택시민재단 이은우 이사장님을 비롯한 토론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과거 밀천이 들지 않는 ‘산업역군’, ‘민간외교관’, ‘애국자’ 등으로 칭송받던 기지촌 할머니들은 지금 국가, 지역사회, 가족들에게도 외면을 받으며 늙고 병들어 기지촌의 쪽방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는 슬픈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 안정리의 미군기지촌 할머니들은 심각한 주거 문제와 이로 인한 생계의 위협과 심리적 박탈감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국가나 지자체가 자국민 보호책임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기지촌 미군위안부 피해 여성의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생활안정 등 경제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평택시 미군위안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평택시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등 각계의 다양한 논의를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24일

평택시의회 의장 권영화

[주제발표문]

미군 기지촌 위안부 삶과 인권
“미군 기지촌 ‘위안부’ 역사와 운동,
당사자 ‘증언’의 의미”

이 나 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미군 기지촌 '위안부' 역사와 운동, 당사자 '증언'의 의미

이나영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나눌 이야기들

1. 역사적 소송과 판결의 의미
2. 미군 기지촌의 역사
3. 여성운동과 말하는 서발턴의 가능성
4. 나가며: 우리의 책무

I. 역사적 소송과 판결의 의미

미군 기지촌 '위안부'들의 소송

2014년 6월 25일: 미군 기지촌(US military camp towns) 성매매에 종사하던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1인당 1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취지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

- **원고:** 1957년부터 2008년까지 대한민국 내 각 지역에 소재한 기지촌에서 기지촌 위안부로 미군 상대 성매매에 이용되었던 여성들. 기지촌여성인권연대, 새움터, 국가배상소송공동변호인단
- **피고:** 공무원들이 기지촌을 조성하고 관리하여 성매매를 조장함으로써 원고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하여 국가배상의 책임이 있는 국가-대한민국(출처: 국가배상 소송장)



- 원고인단은 “**한국에 일본군 위안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미군 위안부’ 제도를 만들고 철저히 관리했다**”며 “국가의 누구도 우리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외화벌이로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쟁 이후 가난해서, 또는 인신 매매대 기지촌에 온 우리는 각종 폭력 때문에 강제로 미군을 상대했다. 수령 같은 기지촌을 빠져나가려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그들 손에 끌려 돌아왔다”고 전했다.
- 원고인단은 정부가 기지촌 내 불법이던 성매매를 용인하고, 여성들을 상대로 **한 미군 범죄까지 묵인했던 사실도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기지촌 미군 위안부 제도의 역사적 사실과 피해를 명확하게 밝히고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경향신문, 2014-06-25).
- 기자 회견에서 이들은 “**한국 정부의 기지촌 정책은 ‘미군 위안부 정책’이었다**”며 “정부가 기지촌 내 미군 위안부 제도의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

첫 번째 판결

- 2017년 1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한국 내 미군 기지촌 ‘위안부’ 피해 여성 57명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판결
 - 기지촌의 조성 및 관리·운영 등 성매매 정당화·조장에 관한 직접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그러나 1977년 법령이 정비되기 이전 성병 감염인에 대한 격리 수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
- 의미
 - 국가의 강제적 성병관리가 위법 행위였음을 인정
 - 국가 권력기관에 의한 국민의 불법 수용과 가혹행위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항은 공소시효 적용에서 배제되어야 함을 명시함

두 번째 판결(2018년 2월 8일)

“국가의 기지촌 운영·관리 과정에서 기지촌 위안부였던 원고들을 상대로 성매매 정당화·조장행위와 위법한 강제 격리수용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일부 원고들에 대하여만 500만 원씩의 위자료만 인정한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들 전원(2심 117명)에게 700만 원(74명) 또는 300만 원씩(43명)의 위자료 지급을 명함.

의의

■ 기지촌 운영, 관리에 국가의 관여를 인정

■ 원고들이 자신의 입으로 진술하고 법원이 중요한 입증방법으로 인정

대부분 고령인 원고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털어놓은 매우 어려운 결단의 결과라는 점과 각 진술이 개별적임에도 피해 내역은 당시 사회의 '구조적' 모습을 반영한 매우 유사한 양태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중요한 사실 인정의 자료 (하주희, 2018)

■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인권가치의 확인과 국가의 책임에 대한 규명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이 규정한 계약당사국의 의무를 재확인, 이를 위반한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 국가의 책임 확인

→ 오랫동안 침묵 당했던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공적 장에서 들리게 됨

→ 오랜 운동의 역사, 활동가들의 헌신, 당사자들의 성장

II. 미군 기지촌의 역사

1. 미군 주둔과 기지촌의 시작

- 1945년 9월 미군 주둔 시작
 - 1946년 5월 <부녀자매매 또는 매매계약금지>를 공포: 부녀자(인신)매매만 금지, 자발적 공창(공창제) 허용
 - 1947년 11월 14일 <공창제도등폐지령> 공포, 1948년 2월 14일 효력발생: 일제가 만든 공창제 폐지, 매춘 금지(쌍벌제, 매개자, 알선자 등 제3자 처벌)
 - 공창제도의 특징: 등록제, 세금부과, 강제성병검진, 특정구역지정 → 국가규제주의 State Regulatory System
 - 미군기지촌 형성 (city club, 미군상대 클럽 운영 및 방치, 조장)
 - 형태상, 운영상 일본군 위안소와 유사함
 - **표면상 금지주의(criminalization), 본질상 규제주의(state regulation)의 시작**
- ❖ 공창제 폐지 좌우합작 여성운동

1-1. 미군 (기지촌) 성매매 형태 (1945-1949)

1. 미군이 직접 운영하고 주로 군부대 안에 위치한 장교클럽과 사병클럽
2. 부대 근처에서 한국인 민간 업자가 운영하되 미군의관과 헌병이 지정하고 체계적인 통제를 받는 유곽형태
3. 부대 근처에서 한국인 민간업자들의 의해 운영되는 미군 병사 전용클럽인 '도시 클럽(City Club)', 혹은 군인 '서비스 클럽(service club)'
4. 이외에 댄스홀, 카바레, 빠, 카페 등 일반인도 이용하되 미군이 주로 출입하는 유흥(entertainment) 시설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

1-2. 미군 (기지촌) 성매매의 특징 (1945-1949)

- 국가규제 성매매 체제(일제 공창제도)의 기본 골격을 유지
- 일제 시기 건설된 집창지역 활용
 - 성매매 여성/지역에 대한 접근성 재고(순습계 병사들의 “성적 욕구 해소”)와 효율적 성매매/성병 관리를 위해 (“병사들의 안전과 건강보장”)
- 형태 및 관리 면에서 많은 부분 일본군 ‘위안소’와 특징을 공유
 - 군의 엄격한 통제와 규제 하에 있었음
- 설치 및 경영 면에서도 일본군 ‘위안소’와 유사한 점이 많음
 - ① 미군직영
 - ② 민간업자가 경영하나 미군의 관리·통제를 받으며 미군만 전속으로 이용하는 곳
 - ③ 민간업자들이 경영하는 일반 업소이나 미군지정으로 미군의 편의를 특별히 봐주는 곳
- 이후 모순적인 한국 성매매 체제(표면상 금지주의+국가규제주의)를 유지하게 하는 원인 제공

2. 한국전쟁 시기(1950-1953)

- 연합군 위안소 & 한국군 위안소 동시에 설치
 - 1950년 여름, 부산 위안소의 설치에 이어 마산에 연합군 위안소 5개소 설치
 - 1951년, 부산에만 ‘위안소’ 74개소와 UN군전용 댄스홀 5개소가 허가
 - 1952년까지 UN군 위안소는 78개소, ‘비공식 위안소’ 600-700개소에 달했다고 함.
- 설치 및 관리 방식
 - 한국군(정부)이 직접 개입하여 설치하고 민간업자가 감독하는 형식
 - 민간업자들이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관계당국에 신청하고 이를 정부가 허가하는 (관리하는) 방식
- 실제 군인 전용 성매매 시설이자, 군의관이 등록, 성병관리 등을 엄격히 했다는 점에서 유엔군(미국)의 요청과 협조 하에 한국군(정부)이 직접 설치하고 경영한 ‘직영’ 군대 ‘위안소’에 가까움

3. 한국 전쟁 이후 (이승만 정권, 1953-1960)

경계에 대한 공포와 위협한 여성 통제하기

- **한국 정부:** 국가 건설 시기 '전통문화'와 '민족'의 경계에 대한 불안감 증대(한국 여성과 외국 남성과의 성적 관계, 미국 문화의 무분별 확산, 혼혈아 등)
- **미군:** 자국 병사들의 '안전'한 섹스를 위한 성병방지대책 고심("성병 감염원(한국 여성)"으로부터 미군 병사들의 건강과 안전 지키기)

▶ 양국간 성병대책위원회 조직

1957년 제4차 회의

- 성매매 여성을 유엔군, 국군 주둔지 및 서울, 부산, 대구 등에 집결시켜야 한다는 의견 제기

3. 한국 전쟁 이후 (이승만 정권, 1953-1960)

국가의 개입과 기지촌의 본격적인 형성

- 1957년, 7월 6일, 보건사회부·내무부·법무부 장관은 'UN군 사령부 이동에 수반하는 성병관리문제'라는 안건으로 모여 "유엔군 출입 지정 접객업소 문제 및 특수 직업여성(숙칭 위안부)들의 일정지역에로의 집결문제"에 합의
- 미군부대(유엔군) 주변의 댄스홀과 바 등을 내국인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 미헌병대에 구역 통제권을 부여
- '창녀' 등록, '위안부 자치대' 조직, 교육 실시
 - 구획화와 격리, 효율적 감시체계 형성
 - 성병진료소 43개소가 미군기지가 집중되어 있는 서울, 부산, 대구, 파주, 양주, 평택 등 6개 지역에 위치하게 됨
 - 1957년, 미군 외박 허용, 기지촌 성매매 성장

4. 박정희 정권(1961-1979): 기지촌의 공고화

- 군사구데타로 집권
- <윤락행위방지법> 제정(1961년): 윤락행위 및 알선금지, 윤락행위자 보호지도소 위탁, 윤락 여성과 포주간의 채권 채무 불인정 → 시행령 부재, 법적 실효성 거의 없음
- 특정구역 설치(1962년): 전국 104 지역을 지정, 실질적으로 성매매 허용 & 지원 (미군 기지촌 성매매, 관광호텔, 집창촌 포함, **1970년대 기생관광**)
 - 기생관광반대 여성운동: 한국교회여성연합회(1970년대)
- <관광진흥법> 제정: 관광수입으로 경제성장 모색
 - 기지촌의 클럽들을 '특수관광시설업체'로 지정 → 면세주류 공급, 달러로 세금 납부
- <한미친선협의회> 구성: 기지촌 관리에 개입
 - 기지촌 조성, 관리, 여성등록 및 관리통제 시스템 마련: 구획화, 체계적 관리 및 통제(등록제, 강제적 성병검진, 격리수용, 교육)
 - 1970년대 미군철수를 막기 위해 통제 시스템 강화: 기지촌 정화대책(심화된 성병통제와 흑백 분리)

여성등록제

성병 감염 방지 및 품위유지 면과 현지 주둔 유엔군에 대한 위안 또는 사기양양 면을 고려하여 위안부들의 집단 수용시설 마련 권고

UN軍相對慰安婦
13日부터登錄實施
서울시경에서는 서사회
국에 「유엔군상대 위안부
성병관리사업계」 계획에 따
라 3일부터 유엔군상대
위안부의 등록을 관하-선
서에 전달해서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등록대상은
▲법적준의관계없이 단-
인의 외국인과 동거하고
있는 여성 ▲유엔군상대 위
안부들이라고 한다

출처: 동아일보, 1961. 9.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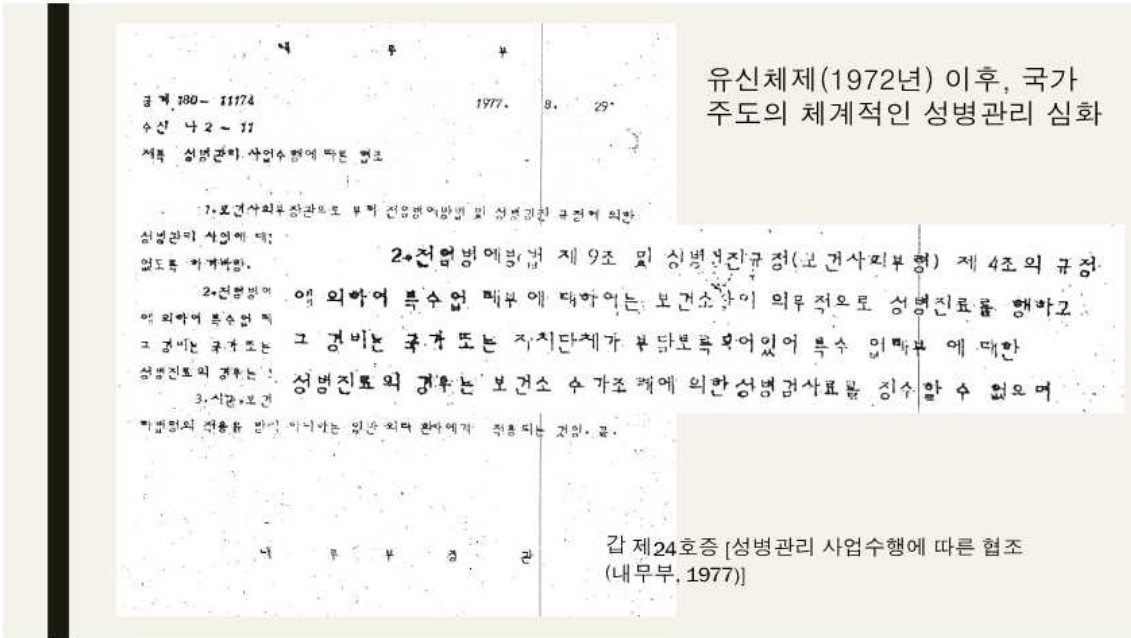
가. 문제 이 관련이긴
가. 현재까지 각 유엔군 주둔지역 내 수용하고 있는
위안부들은 약 10,000명으로 추산되며 사할단유
감하기까지 여러가지 형상이 있다
나. 성병감염방지를 위하여 주둔지역의 현지유엔군
인원에 대한 위안부는 사기양양 면을 고려하여
여 위안부들의 집단수용시설인 시설을 건립하여
한 예산의 소요 되므로 성병사상상의 예방할
다. 성병예방에 대하여는 유엔군사령관의 사령
금인 제 제가 부관령으로 이루어져 있다

갑 제11호증 [UN군 간이특수음식점 영업허가
사무취급 세부기준 수립(경기도, 1961)]

**이후 모든 그림의 출처는 2014가합544994 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상 소송 자료 중 일부



갑 제126호증
[검진증(파주동산병원, 1969)]



유신체제(1972년) 이후,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성병관리 심화

갑 제24호증 [성병관리 사업수행에 따른 협조 (내무부, 1977)]

낙검자(落檢者) 격리수용 (인권침해)



양주군 성병관리소 전경



2층의 한 방문에 붙여
져 있던 수용자 일과표

갑 제125호증 사진

‘토벌,’ 강제 검진과 치료를 명목으로 한 감금

- 보건증, 허가증 냈으니까, 일주일 두 번씩 검진하지, 보건소에서 검진하지, 삼(3)개월에 한 번씩 혈압 검사하지, 일체 검사해, 뭐 성병 이런 것 병 있으면 안 되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화요일 금요일날(1).
- 헌병 애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보건증 없으면 잡아가고(11).
- 보건소에서 검진하는 거, 그게 제일 힘들었어...(중략)일주일에 한 번 검진할 때가.. 다리 벌리고, 기계 넣고, 저 그 귀파는 것처럼 약 이렇게.. 제일 싫었어, 그 땐 그냥 올라가서 남자들이.. 약도 주고 다 해주는 거지, 어려날이고.. 보름, 지금은 피곤하다고 하지 지금은, 페니실린이 너무 독해가지고 끔찍했대, 두 대씩 맛았대, 바늘도 얼마나 컸는지 몰라, 그야말로 맞고나면 아퍼, 우리나라 여자들한테만 더 많이 줬대요, 이만큼해야 되는데.. 잘못 맞으면 며칠씩 드러눕고 다니지도 못하고 그랬었잖아,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항의라고 하고 하지 그때는 그런 말도 못 하고 나 죽었소, 했잖아(14).
- 내가 병 줬다고 또 헌병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또 병원가.. 병이 없는데도 나한테 옮았다고 와서 나를 미군이 와서 병원에 가라고 찌르고 그랬다고(13).



성병예방교육 및 계몽교육

6. 계몽교육

- 1) 보건소장은 관할 지역의 특수업체부를 소집하여 매월1회이상 성병예방 및 검진 치료의욕을 고취 등을 주제로 하여 교육을 시킨것
- 2) 보건소장은 관공업소 임주로 하여금 검진을 받은 자만을 출입시켜도록 할것.
- 3) 보건소장은 관공업소 총업원의 건강진단 발급시 차례적으로 관공업소 총업원에 대하여 주기적인 성병예방 및 치료의욕 고취에 대한 계몽 교육을 시킬것.

갑 제67호증
[사업지침 - 전염병관리(보사부, 1975)]

강제적 성병예방교육 및 계몽(교양)교육

- 우리가 클럽에서 일하고 있을 때 우리가 외화획득 했다고 좀 불쌍히 많이 여겼어, [국회위원] ○○○씨가. 도와주고 생각하고 그랬었어...그 때 우리가 외화획득했다고 고생했다고 나라 살렸다고... ○○○씨도 그랬어. **시장 ○○○ 마누라도 '언니들은 나라를 살리고 외화획득 했기 때문에 도움 받고 살아도 괜찮다고. 마음을 약하게 먹지 말고 자랑 삼아 살으라고' 이런 말도 하고 그랬었어...(1)
- [70년대 초반] 군청에서 나와서 했나... 의원들이 나와서 했나... 클럽 창고를 잠깐 빌려서 한 두어 시간 했어...(내용은?) 여자들 미군들한테 잘 해주고 깨끗한 몸으로 미군 접촉하게 하고, 주의를 주는 거지(14).
- 가끔 보건소 가서 클럽에 모이라고 하면 맨날 그 영화 틀어주고. 보건소 영화...어쩌다 잊을 만 하면 와서 틀어주고(10).

4. 박정희 정권(1961-1979): 기지촌의 공고화

- 기지촌 경제의 활황
 - 기지촌관련 산업이 대한민국 전체 GNP의 25%
 - 미군 전용 হল은 1964년, 9백 7십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는데, 이는 당시 한국이 벌어들이는 총 외화 1억 달러의 10% 수준
 - 19060년 대 말, 미군 주둔으로 얻는 외화는 건설, 용역, 물품으로 구성되는 직접군납 1억 달러와 불법 PX경제 등을 제외하고도 연간 1억6천만 달러에 달함(전체 수출액의 4에 해당)
- 여성들에 대한 이중적 처우
 - 미군위안부, 양공주, 양색시, 양갈보, UN마담 등으로 불리며 사회적으로 천시당함
 - '개인 외교관', '애국자' 등으로 호명되면서 외화벌이에 주력할 것을 당부 받음
 -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의 도구
 - 포주의 착취, 폭력, 미군의 폭력, 살해, 가족의 천시, 지역 주민들의 멸시 등을 받음
 - 그러나, 실제 여성 1인이 버는 외화(PX 물건)에 가족, 지역 사회, 국가가 기생함

한국의 미군 기지촌 성매매 제도로서 기지촌, 문화로서 기지촌

일제 식민주의, 미제국주의, 냉전시대 군사주의, 독재체제, 발전국가, 가부장제가 연결된 한국 기지촌만의 특수성 존재-**성차별, 인종차별, 계급차별**

- 제도로서 기지촌
 - 일제 식민지 시기 공창제도와 포스트식민 국가의 대규모 미국 주둔
 - 전후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외화벌이)의 명목으로 지지된 제도
- 문화로서 기지촌
 - 성적, 인종적, 계층적 타자로서 미군 '위안부'와 이들에 대한 지속적 사회적 배제와 혐오, 낙인화
 - 성차별과 계급차별, 인종차별의 교차 지점에서 발생하는 여성의 억압
 -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외화벌이)을 명목으로 지속됨
- 식민주의, 미제국주의, 냉전시대 군사주의, 독재체제, 발전국가, 가부장제가 연결된 한국 기지촌만의 특수성 존재

III. 말하는 서발턴의 가능성

여성운동과 여성들의 저항

여성운동의 역사

■ 뿌리와 배경

1970년대 기생관광반대 운동을 주도한 <한국교회여성연합회> 등 기독교 여성운동과
19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성장한 한국의 진보 여성운동

■ 두레방(의정부, 1986), 새움터(동두천, 1996), 햇살사회복지회(평택 안정리, 2002) 등 -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말 걸지' 않았던 여성들의 삶에 대한 관심과 공감, 지 지

- ① 여성들에게 안전한 조우의 장, 임파워먼트(empowerment)의 기회 부여: 자조모임, 연극, 공동 식사, 음악회, 여행 등
- ② 미군 '위안부'들에 대한 오랜 사회적 낙인을 제거하고자 노력
- ③ 미군 성매매는 반인권 범죄행위 vs. 미군 '위안부' 여성들은 구조의 피해자
- ④ 한국의 성매매 역사와 현재의 착취적 산업구조 간 연관성 환기

■ 초국적 연대 (Transnational Women's Solidarity)

- 1997년 5월 오키나와,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동아시아 여성 네트워크(East-Asia-U.S. Women's Network Against US Militarism)> 창립
- 지역의 군대 성매매 문제와 민족주의의 한계를 넘어,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가 어떻게 군사주의와 인종차별주의, 국가통치와 안보의 문제와 연결되는지 국제관계 속에서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됨

■ 탈식민지 연대 (Postcolonial Women's Solidarity)

- 2012년 <기지촌여성인권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반성매매단체, 정대협 등)
-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미군 기지촌 '위안부' 문제가 일제 식민지와 전시 여성에 대한 폭력의 문제, 지역 가부장 문화와 인신매매, 평화와 보편적 인권에 대한 문제, 계층과 인종차별의 문제임을 인식
- <정대협>의 윤미향 대표와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 김원옥의 연대 메시지

"김원옥 할머니가 기지촌 할머니들에게."

https://www.youtube.com/watch?v=isD19k56y_M&index=99&list=PL3YRufVCDbf-u7yFVCmGrYwREM2DPxzSK

저는 소외받고[아] 온 김원옥입니다. 일본 '위안부'로 있다가 해방 되서 한국에 왔는데, 고향에 간대니까 평양으로 가는 줄 알았더니, 온 게 인천입니다. 인천에 와서 그냥 너무 남루하니까 할 수 없어서 가지 못하고 옷이라도 그래도 한 벌 해 입고, 노자라도 해 가려니까 삼팔선이 딱 가로막혀서 못 갔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생활이 그랬으니까 부끄러워서 누가 알까봐 무섭고 참 숨어살다 시피 했는데, 정대협을 알아서, 거기에 나와 가지고 가만히 젊은이들 하는 걸 보니까,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일본 정부가 부끄러운 건데 내가 여태까지 착각하고 나만 부끄러운 건 줄 알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매주 수요일 날 집회도 나오고, 외국에서 오려면 외국에, 한국에서 오려면 한국에, 어디가서나 부끄러움 없이 있던 그대로 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원하던지요.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마음도 시원해지고 시방은 조금 사람 사는 것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기지촌 미군 '위안부' 할머니들], 정말 세상에 내놓기가 부끄럽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정부에서 시켰으면 정부가 부끄러운 거지,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고 여러분이 부끄러운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떳떳하게 나서서 할 말 있으면 하고 정부한테도 요구할 게 있으면 요구하세요. 그냥 가만히 숨어서 있다고 우리 허물이 아닌 말로 안 밝혀지고 없어지나요. 안 없어져요. 우리 허물은 허물대로 생전 내가 가지고 있다가 가는 거니까. 그러 생각하지 말고, 요구할 것 요구하고 달랄 건 달래고, 받을 건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무조건 가만히 있다고 내 인생 대신 살아주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나서세요. 나서서, 나 시방 80이라 온 몸이 그야말로 성한 데가 하나 없는 사람이 매주 수요일마다 외국도 머나먼 곳에 그 힘든 데를 왜 다닙니까. 세상에 밝히고 나같이 다시는 고생하지 말고 우리 후세대는 편안한 삶 살라고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같이 손잡고 일합시다 (김원옥).

VI. 나가며

침묵과 ‘증언’의 의미

- 전제
 - 역사적 맥락과 권력관계에 의해 만들어지는 침묵은 맥락과 권력관계가 바뀌지 않는 한 결코 드러나거나 재현될 수 없음
 - 사회적 타자들이 말할 수 있게/없게 하는 조건은 바로 기지춘 제도와 문화를 구성하는데 공모해 온 우리 자신
- 소송의 의미: 여성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통해 집단적 망각과 역사적 왜곡에서 ‘우리’를 일깨우려 한다는 점
 - 당사자 임파워먼트(empowerment)
 - 탈식민지적 기획: 서발턴의 사회적 형상화, “말 건네는”(speaking to) 서발턴

우리의 역할 및 책임

- 포스트/식민, 냉전체제 하의 동아시아 → 비판적 인식과 연대
- '역사에 숨겨진 진실'들을 대면하고 진실의 그물망 안에 있는 수많은 '우리들'을 마주해야
 - 누구나 알고 있었으나, 아무도 말하지 않던 아픈 현대사의 단면, 그 책임은 우리들에게!
 - 타자를 생산해 온 우리들의 차별적 인식과 관행 성찰
 - 항공주 가 누구인가에 관한 진부한 질문을 넘어, 공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침묵과 드러냄을 강요하는 '안/듣는' '우리(나)는 누구인가'의 문제로 나아가야
- 페미니스트 정치학으로서 미군 기지촌 여성 운동의 의미 이해하기
 - 여성인권침해의 역사를 이해하고 현재 성폭력에 문제 제기하는 여성들의 목소리와 연결할 것
 - 남성중심사회에서 성차별적 구조를 인식하고 변화시키는 운동에 관심을 가질 것

우리의 역할 및 책임

- 진상규명 및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20 대 국회, 유승희 의원 등 18 인 , 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 경기도 지원조례 입법예고: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조직적인 성 구매자인 미국정부의 책임 인식: "미국정부와 한국정부가 손잡고 만든 시스템"
-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운동에의 관심과 참여
- 일상의 성차별과 성별고정관념 성찰하고 변화하기!! 평등, 인권 감수성 제고

“성평등 없는 민주주의 없다!”

THANK YOU!

Q & A

[주제발표문]

평택시 미군 위안부 지원 조례 필요성과 방향

이 은 우

(사)평택시민재단 이사장

평택시 미군위안부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과 방향

이 은 우(평택시민재단 이사장)

1. 조례 제정 배경 및 의미

○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평택지역(팽성읍, 신장동)에 180여명 거주 추정)은 지금 대부분 고령(70~80대)이고 사회적 멸시 등으로 인해 가족관계 단절이 많고, 지역사회에서도 차별과 소외가 존재하면서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아픔과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음.

○전국에서 대표적인 기지촌을 형성했던 평택에서 기지촌여성(미군 위안부)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고, 지역사회의 차별과 편견을 해소해 가는 과정으로서 진정한 인권회복과 현실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을 통해 현실적인 도움을 주려고 함.

○평택에서 살고 있는 기지촌 여성들이 차별과 아픔을 견뎌내며 생긴 가슴 속 응어리를 풀어내면서 삶의 주인공으로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계기 마련. 시급히 조례를 제정하여 남아 있는 삶 동안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화해를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통해 행복하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함.

○국가경제와 안보를 담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조장, 유지, 묵인, 방조된 미군 기지촌 위안부 문제는 한국사회의 모든 적폐가 종합적으로 작동한 1호 적폐라고 할 수 있음. 새로운 한국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미군 기지촌 위안부 문제 해결이 중요함.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국가배상청구소송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림(2018.2.8.). 국가와 지자체의 △불법적인 기지촌 조성 과 운영·관리 △조직적·폭력적 성병 관리 △성매매 정당화 조장 등의 책임을 인정했으며, 조만간 대법원 판결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됨.

○기지촌이 존재했던 지역중 전국 최초의 조례 제정을 통해 기지촌의 슬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맨 앞에서 견뎌내야 했던 그녀들을 품어 내고, 국제평화도시의 전망을 만들어 내려고 함. 평택시의 평화인권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기지촌이 존재했던 타 지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될 것임.

○국회(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와 경기도의회(박옥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도 미군 위안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서도 관련 법률 및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평택시가 선도적인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평택시가 추진하고 있는 열린 국제평화도시 구축에도 기여할 것임.

○대다수 주한미군들이 평택미군기지로 이전하고 있는 평택에서 기지촌의 아픈 역사와 고통의 삶을 성찰하면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군위안부 문제를 품어 안는 정책은 시급한 과제임. 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조례 제정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있는 일본정부, 일본내 우익인사들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효과가 존재.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며 오르는 집세를 감당하지 못해 삶의 터전을 잃고 쪽방으로 밀려난 할머니들, '병 덩어리' 몸과 가난, 끔찍한 낙인의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낸 고령의 기지촌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남은 시간이 물리적으로도 얼마 남지 않았음.

남아 있는 삶 동안 가족과 지역사회와의 화해를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통해 행복하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 갈 수 있도록 평택에서부터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것은 민선7기 평택시의 슬로건인 “시민중심의 새로운 평택”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임.

2. 조례 제정 필요성

○평택지역의 특수성·역사성

-미군기지가 한국전쟁 이후부터 존재하고, 미군기지확장이전으로 대다수 주한미군이 평택에 주둔하고 있는 현실.

-오랜 기간 미군 기지촌에서 벌어들이는 달러와 공급되는 물자 등을 통해 지역경제와 지역민의 삶이 유지되어 왔음.

※기지촌 경제의 활황(이나영 교수)

·기지촌관련 산업이 대한민국 전체 GNP의 25%

·미군 전용 홀은 1964년, 9백 7십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는데, 이는 당시 한국이 벌어들이는 총 외화 1억 달러의 10% 수준

·19060년 대 말, 미군 주둔으로 얻는 외화는 건설, 용역, 물품으로 구성되는 직접군납 1억 달러와 불법 PX경제 등을 제외하고도 연간 1억6천만 달러에 달함(전체 수출액의 ¼에 해당)

-미군기지 이전으로 평택지원특별법이 만들어지고 예산 지원을 받고 있으나 정작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여성들을 위한 정책이나 예산지원은 전무했음.

-조례 제정을 통해 품격 높은 국제평화도시 구축.

-주한미군 부인회에서 과거를 성찰하면서 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통해 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고 있는 현실에서 평택시의 적극적 노력 필요. 조례 제정은 일부에서 우려하는 주한미군과의 갈등을 유발시키기보다 주한미군과의 바람직한 관계형성과 호혜관계를 증진시킴.

○대상자인 미군위안부 여성들의 고령화로 인한 급박한 지원의 필요성

-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은 지금 대부분 고령(70~80대)이고, '병 덩어리' 몸과 가난, 끔찍한 낙인의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낸 고령의 기지촌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남은 시간이 물리적으로도 얼마 남지 않았음.

-대다수가 기초생활 수급권자이며 30~40만원의 수급비로 생활하고 있음. 미군 기지이전사업으로 월세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중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

○180여명의 미군위안부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예산지원 부담 크지 않음

-현재 미군기지가 존재하고 있는 팽성읍과 신장동 일대에 180여명의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햇살사회복지회, 새움터)

*1984년 10월, 팽성읍사무소 총무계가 조사한 위안부 현황을 보면 팽성읍 안정리 일대에 552명(미성년자 133명 포함)의 위안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인권회복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예산 지원을 하더라도 평택시 재정 규모상 부담이 되지 않음. 관점과 의지가 중요함.

-낙인과 편견으로 인해 실제 신청자 수는 적어질 수도 있음.

○선도적 입법으로 국제평화도시 이미지 창출과 지방자치 활성화 기여 및 타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지방자치, 지방분권은 지역의 특질에 맞는 정책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음. 그런 측면으로 평택지역의 특수성·역사성을 반영한 미군위안부 지원조례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 될 것임

-일각에서는 상위법이 없어서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 자치제도의 특성을 간과하고 지방분권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의견임

-국제평화도시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줄 수 있음

-기지촌이 존재했던 많은 지역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며, 새로운 평택을 상징화하는 효과도 클 것임

○대다수 주한미군들이 평택으로 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지촌의 아픈 역사와 고통의 삶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진정한 인권회복과 현실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은 시급한 과제

-지속적으로 미군들이 늘어날 경우 여성 인권 문제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지촌 할머니들의 삶과 인권 회복을 위한 조례제정 등은 과거에 당연시 했던 차별과 야만, 폭력을 이제는 '금지'하고, 불의의 연속성을 끊어내며, 지금 이 순간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지역사회의 약속이자 실천임.

-미군기지이전으로 인해 평택지원특별법이 제정되고 혜택을 받고 있는 평택에서 지금이라도 기지촌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고 응답하는 것은 아름다운 공동체 실현을 위해서도 의미 있는 출발임.

○시민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은 평택시의 책무

-민선 7기의 슬로건인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을 보여주는 계기

-정장선 평택시장이 강조하는 국제평화도시 실현은 피해자 중심의 인권실현과 지원에서 완성

3. 조례 연구모임 구성 및 추진 과정

○기지촌여성(미군 위안부) 지원 조례 연구모임 활동

-시민참여로 함께하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2018년 4월 조례 연구모임 구성.

-조례안 작성 및 추진 역할

-4월부터 현재까지 최미정 경기여성연대 정책위원장과과의 간담회 등 6차례 연구모임 진행하여 조례안 확정

-연구위원(총 10명): 우순덕(햇살사회복지회 원장), 이은우(평택시민재단 이사장), 김용래(전 평택시의회 사무국장), 이정숙(포승해피홈방정환지역아동센터 센터장), 권명희(사회복지사), 최종엽(공인중개사), 오재호(회사원), 한재호(직업상담사), 최선자(사회복지사), 송민섭(청년)

-평택시, 평택시의회와 조례 관련 간담회 진행 계획

-9월 18일, 평택 미군 기지촌 할머니들과 함께하는 추석 나눔 잔치 예정

○기지촌여성(미군 위안부)의 삶과 인권 - 지원 조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강연회

-일시: 4월 18일 수요일 오후 7시

-장소: 비전동성당 지하 소성당

-강사: 이나영 교수(중앙대/기지촌여성문제 활동가)

* 당사자 발언: 김숙자 이모(미군 위안부 출신)

※100여명 참석하여 미군위안부 문제 공감대 형성

○기지촌할머니들과 함께하는 “꽃보다 사람” 손잡기 여행

-일시: 6월 1일 ~ 2일(1박 2일)

-장소: 전북 군산 일대

-대상: 평택 기지촌할머니

※기지촌할머니들의 치유와 힐링. 아픔을 풀어내고 함께하는 지역공동체형성. 기지촌여성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70여명의 시민이 후원자로 참여.

○기지촌여성(미군 위안부) 지원 조례 공약 제안 활동

-각 후보자에게 기지촌여성 지원 조례 정책 제안 및 후보자 찬반 질의

-조례 찬성 후보자들과 협약 진행(정장선 평택시장 등)

-미군위안부 지원조례 제정 관련 지방선거 후보자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권영화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홍선의 의원·곽미연 의원·이윤하 의원·이종한 의원·유승영 의원이 찬성 입장을 밝힘.

-평택시의회 의원 대다수가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

4. 조례의 구성과 제정 방향

1) 조례의 명칭: 평택시 미군위안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의 제정 목적과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미군 위안부’와 평택시의 시급하고 실질적인 책임을 강조하기 위한 ‘지원’을 명칭에 사용함.

-일부에서는 ‘미군위안부’라는 제명에 불편함을 제기하기도 하나 불편함 때문

에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거나 왜곡할 수는 없을 것임

-‘미군위안부’ 제명에 대한 일부 시민들의 거부감을 줄이고, 미군을 상대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들에 대한 낙인을 피하기 위해 기지촌이라는 공간적 특성을 강조하여 ‘기지촌여성(할머니)’로 제명을 정할 경우는 그 범위가 불명확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기지촌 정책과 역사를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음.

-‘미군 위안부’라는 명칭은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1957.2.28) 제 4조 3항에 명시적으로 적시된 용어로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 국가의 불법적인 기지촌 조성과 운영·관리 등의 책임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나옴.

○조례 제명에 대해서는 목적과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려고 함.

2) 조례의 구성

분류	평택시 미군위안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시장의 책무
추진체계	제4조 평택시 미군위안부 지원위원회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 지원기관 등
지원대상자 및 지원사업	제7조 지원대상자 제8조 지원내용 제9조 지원신청 및 심사 제10조 재심의
보칙	제11조 지원중지 및 환수등 제12조 권리의 보호 제13조 비밀보장 제14조 준용 제15조 시행규칙
부칙	시행일

3) 담당부서를 중장기적으로 한미협력과로 업무지정

○기지촌 위안부 문제와 관련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담당 부서

를 한미협력사업단(한미협력과)으로 업무지정 하는 것이 필요.

-평택지역의 특수성·역사성을 고려하고 업무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고려할 때 한미협력과로 업무가 지정되는 것이 필요. 미군기지이전이 사실상 완료된 시점에서 한미협력사업단의 역할과 기능이 변화되어야 함.

4) 새로운 협치 모델로 조례 제정

○미군위안부 지원단체, 시민단체, 평택시의회, 평택시 담당부서가 참여해 함께 협의해 조례를 제정하는 민관 협력 모델로 조례 제정 추진

-소통과 협치를 실현해 내는 좋은 사례이자 긍정적인 효과가 큼

-조례 상정을 의원발의로 할지, 시 발의로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 필요

-9월 10일 개회 예정인 제201회 제1차 정례회 때 조례안 상정 및 의결 목표

5) 조례의 주요 내용

가. 총칙

○목적 규정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1945년 9월 8일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한 이후부터 2004년 9월 2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평택시내 미군위안부의 실태 및 인권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주거 및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미군위안부의 복지향상과 인권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의 성인지적 역사인식 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미군위안부 실태조사·명예회복 활동 지원·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 -복지향상·인권증진·시민의 성인지적 역사인식 정립 ※성인지적 역사인식: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에 근거한 고정관념, 사회적 관행, 성별 역할과 불평등한 지위를 이해하고, 그동안 역사 속에서 배제되거나 축소된 여성의 경험과 입장을 반영하여 역사를 인식하는 것</p>
---	---

○정의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군위안부”란 미군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을 말한다. 2. “미군기지촌”이란 미군이 주둔하였거나 	<p>-기지촌을 행정구역으로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현실에 더욱 부합 -평택은 미군기지가 있는 팽성읍 안정리 일대와 신장동 일대에 기지촌이 존</p>
--	--

주둔하고 있는 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에서 미군을 상대로 주류 판매·유흥 및 접객행위 등의 영업을 하는 업소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재했음 -전국적으로 미군기지가 존재하던 40여 지역에 미군 기지촌이 조성되어 관리됨
--	---

○시장의 책무

<p>제3조(시장의 책무)</p> <p>①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미군위안부의 명예회복과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미군위안부의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교육과 인권에 대한 교육및 당사자들의 치유사업을 추진하여야한다</p> <p>③ 시장은 미군위안부의 실태 및 인권피해 사례를 조사하기위하여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고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공·협조하여야한다</p>	<p>-미군기지가 한국전쟁시기부터 존재하고 대다수 주한미군이 평택에 집결하고 있는 평택의 역사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평택시장의 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p>
--	---

나. 미군위안부 지원체계

○평택시 미군위안부 지원위원회

<p>제4조(평택시 미군위안부 지원위원회) ① 미군위안부의 실태조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지원하기위하여 평택시 미군위안부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p> <p>② 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5조 (위원회의기능)</p> <p>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군위안부의 심사·결정에 관한사항 2. 미군위안부 지원내용에 관한사항 3. 미군위안부에 대한 실태조사및 자료수집, 조사연구및 보전에 관한사항 4. 미군위안부의 인권침해구제와 치유및 명 	<p>-위원회 위원 구성과 임기는 지역내 위안부 문제 전문가나 시민사회 활동가 양적 한계를 고려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p> <p>-규칙에서 ‘위원은 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여 형식적인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도록 함</p>
--	--

<p>예회복에 필요한 사항</p> <p>5. 미군위안부 지원기관의 지정과 위탁운영 및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p> <p>6. 그밖에 미군위안부 명예회복과 주거및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p>	
---	--

○지원기관

<p>제6조(지원기관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미군위안부 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해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기관을 외부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p>	<p>-미군위안부 문제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미군위안부 지원단체의 역할이 중요함</p>
--	---

다. 지원대상자 선정과 지원내용

○지원대상자

<p>제7조(지원대상자)</p> <p>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미군기지촌지역에서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중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이상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택시 미군위안부 지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 사람으로 한다.</p>	<p>-평택시 조례 특성을 반영하여 평택에 1년 이상 거주를 명문화</p>
--	---

○ 지원 내용

<p>제8조(지원내용) ① 제6조의 지원기관등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단체운영에 필요한 건물임차비 및 일반운영비 2. 회원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비 3. 자료수집과 조사연구및 자료집발간에 필 	<p>-미군위안부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은 규칙으로 정해서 시장이 정하도록 함</p> <p>-미군위안부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은 조례의 목적 실현을 위해서 필수적</p> <p>-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평택시, 평택시의회, 미군위안부 당사자 단체, 연구단체, 운동단체 등과의 거버넌스를 통한 협력이 최선</p>
---	---

<p>요한 경비</p> <p>②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법령에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계유지와 관련한 비용 2. 주거안정지원 3. 치료, 간병, 보조 장구 사용등 의료비 지원 4. 장례비 지원 5. 미군위안부의 명예훼손·손해배상 및 국적회복에 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지원 6. 그 밖에 미군위안부의 명예회복과 복지향상에 필요 <p>하다고 시장 또는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p> <p>③ 지원기관및 지원대상자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p>	
---	--

○ 지원신청 및 재심의

<p>제9조(지원신청및 심사) ① 이 조례에 의해 지원대상자가 되고자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는 지원대상자 여부를 심사하기위하여 당사자, 증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다</p> <p>③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선정여부를 심사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p> <p>④ 관계인의 구체적 범위와 지원대상자 신청 및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0조(재심의) ①제8조에 의해 위원회가 결</p>	<p>-일본군위안부 신청 방식(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참조하여 신청 방식 등은 규칙에 정함</p>
---	---

<p>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p> <p>② 재심의 심사 결정및 통지는 제9조3항의 규정에 따른다.</p>	
--	--

라. 보칙

<p>제11조(지원중지및 환수등)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원대상자가 지원받기를 거절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전출,사망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p>②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들의 지급을 받았거나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p> <p>제12조(권리의 보호) 제8조2항의 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 할 수 없다</p> <p>제13조(비밀보장) 미군위안부에관한 모든 정보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비밀이 최대한 보장되어야한다</p> <p>제14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p> <p>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예산에 대한 우려를 감안, 예산낭비방지를 위한 지원환수 내용 첨부</p> <p>-미군위안부 특성을 고려해 비밀보장 강조</p>
---	--

평택시 미군위안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1945년 9월 8일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한 이후부터 2004년 9월 2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평택시내 미군위안부의 실태 및 인권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주거 및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미군위안부의 복지향상과 인권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의 성인지적 역사인식 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군위안부”란 미군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을 말한다.
2. “미군기지촌”이란 미군이 주둔하였거나 주둔하고 있는 지역, 또는 그 주변 지역에서 미군을 상대로 주류 판매·유흥 및 접객행위 등의 영업을 하는 업소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미군위안부의 명예회복과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미군위안부의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교육과 인권에 대한 교육 및 당사자들의 치유사업을 추진하여야한다

③ 시장은 미군위안부의 실태 및 인권피해 사례를 조사하기 위하여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고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공·협조하여야한다

제4조(평택시 미군위안부 지원위원회) ① 미군위안부의 실태조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지원하기 위하여 평택시 미군위안부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위원회의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미군위안부의 심사·결정에 관한사항
2. 미군위안부 지원내용에 관한사항
3. 미군위안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보전에 관한사항
4. 미군위안부의 인권침해구제와 치유 및 명예회복에 필요한 사항

5. 미군위안부 지원기관의 지정과 위탁운영 및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미군위안부 명예회복과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기관등)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미군위안부 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기관을 외부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미군기지촌지역에서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중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이상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택시 미군위안부 지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 사람으로 한다.

제8조(지원내용) ① 제6조의 지원기관등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단체운영에 필요한 건물임차비 및 일반운영비
2. 회원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비
3. 자료수집과 조사연구 및 자료집발간에 필요한 경비

②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생계유지와 관련한 비용
2. 주거안정지원
3. 치료, 간병, 보조 장구 사용등 의료비 지원
4. 장례비 지원
5. 미군위안부의 명예훼손·손해배상 및 국적회복에 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지원

6. 그 밖에 미군위안부의 명예회복과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기관 및 지원대상자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원신청 및 심사) ① 이 조례에 의해 지원대상자가 되고자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지원대상자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당사자, 증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선정여부를 심사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관계인의 구체적 범위와 지원대상자 신청 및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재심의) ① 제8조에 의해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심사 결정 및 통지는 제9조3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지원중지 및 환수등)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 1. 지원대상자가 지원받기를 거절한 경우
- 2.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들의 지급을 받았거나 지원금이 잘못 지급

된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2조(권리의 보호) 제8조2항의 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 할 수 없다

제13조(비밀보장) 미군위안부에 관한 모든 정보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비밀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칙에 정할 사항

조례 제4조 ②항에서 정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은 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여성 위원의 수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조례 제8조 ①항에서 정한 사업비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단체운영에 필요한 건물 임차비 및 일반운영비 : 임대료, 공공요금, 연료비등 관리운영비, 인건비등
2. 회원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비: 상담및 홍보, 연대사업및 프로그램운영비등
3. 자료수집과 조사연구및 자료집발간에 필요한 경비등

② 조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생계유지와 관련한 비용
2. 주거생활안정지원 : 월 10만원
3. 치료, 간병, 보조 장구 사용등 의료비 지원
4. 장례비 지원
5. 미군위안부의 명예훼손·손해배상 및 국적회복에 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지원
6. 그 밖에 미군위안부의 명예회복과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기관에 대한 사업비는 지정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조례 제9조에 의해 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미군위안부심사위원회에 별첨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한다

대상자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명	피해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당시 상황	피해지역		
	피해년도		
	피해상황 : 따로붙임		
현재 상황	생활여건 :		

평택시 미군위안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규칙 조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 신청합니다.

※첨부 : 관련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인

평택시장 귀하

[토 론]

당사자 발언

김 속 자

햇살사회복지회 할머니

당사자 발언

김 숙 자(햇살사회복지회 할머니)

저는 햇살사회복지회 회원인 김숙자입니다. 저는 1945년에 전남 목포에서 태어났습니다. 첫 아들을 바랬던 부모는 딸이 태어났다면 어려서부터 학교에 자주 보내지 않으며 구박을 했습니다. 늘 어머니에게 맞으면서 생활하였고 매질을 견디다 못해 열두살 때 집을 나와 기차에서 만난 사람을 따라가서 서울로 가서 식모살이를 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집을 전전하다 열 아홉살에 또래 친구들과 송탄 포주집에 들어갔으나 적응을 하지 못해 아가씨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였습니다.

이후 성환, 김제, 진천, 태안, 안정리에서 미군들과 지냈습니다. 성환에서의 성병검진은 화요일과 금요일에 받았습니다. 성병검진을 받지 않으면 성환지역에서 (클럽에서) 일을 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두쪽이 나도 검진을 꼭 철저히 받아야 했습니다. 그 당시 진천, 태안, 성환 지역은 읍에 보건소가 있었지만 보건소 직원들이 군부대 근처 동네로 와서 성병검진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1976년 안정리에 와서 일을 했고 총무와 감찰일은 197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회장언니가 회비를 걷고 관리 했고 저는 감찰 일을 맡아 했어요. 감찰이 하는 일은 클럽에 새로운 아가씨들이 들어왔는지 보고 모임에 가입했는지, 성병 검진증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는 일 등을 했습니다.

안정리에서 자치회 회장이 모이라고 해서 모이면 평택시 공무원들이 왔었습니다. 안정리의 이 클럽 저 클럽을 돌아다니며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시청이나 읍사무소 관계자 등 여러 사람들이 쌀이나 생활 필수품을 갖고 와서 “언니들은 나라를 살리고 외화획득을 했기 때문에 도움 받아도 괜찮아요.... 마음을 약하게 먹지마세요...”,

“성병 검진 잘 받아서 (미군)손님들한테 서비스 잘 하세요. 성병 옮기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성병검진에서 떨어지면 통복시장 근처에 감방 같은데 가서 갇혀서 지낸 언니들도 있었어요. 어떤 언니들은 606호 주사나 페니실린 주사도 맞았다고 해요. 내가 진천에 있을 때는 그 주사를 맞다가 부르르 떨면서 죽은 언니들을 본적도 있어요.

국화회는 1992년에 평택 안정리 기지촌에서 나이 들고 혼자서 생활하는 여성들을 서로를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모 국회의원은 출마하면서 득표를 목적으로 국화회 결성을 후원하였습니다. 그 국회의원은 “요담에 나이들면 9평 아파트 해주겠다.”라는 얘기도 여러번 하였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언니들이 기초수급비 3~40만원으로 한 달을 생활하는데 월세를 지출하고 난 나머지 20여만원으로 생활비 및 끼니를 간신히 해결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겨울이면 난방비를 낼 형편이 안 되어 냉방에서 지내는 언니들이 대부분입니다.

평택시가 우리가 예전에 젊었을 때는 나라의 외화획득을 많이 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지원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평택시 조례안이 제정되어서 우리가 사는 동안만이라도 조금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성병검진 하고 세 달에 한 번씩 혈액검사를 해야 했고 한 때는 애국자라고 했던 우리를 위해 평택시가 조례를 만들어서 혜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이야기가 많이 알려져서 함께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자 료]

-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주요 내용 요약본
- 경기도 미군 위안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17나2017700 손해배상(국)) 주요 내용 요약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1957년경부터 대한민국 내 각 지역에 소재한 미군 주둔지 주변의 미군을 상대로 한 상업지구(속칭 ‘기지촌’, 이하 기지촌이라 한다)에서 미군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였던 여성들(속칭 ‘위안부’, 이하 위안부라 한다)이다.

나. 기지촌의 형성 및 운영 과정

1) 1950년대 : 미군 위안시설 지정 및 위안부 집결 등

가) 1957.7.경 유엔군 사령부가 도쿄에서 서울로 이전할 무렵 피고 산하 보건사회부, 내무부, 법무부장관은 ‘유엔군 출입 지정 접객업소 문제 및 특수 직업여성(속칭 위안부)들의 일정지역에로의 집결문제’에 관하여 논의를 갖고 위안부들을 일정 지역으로 집결시키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UN군 주둔지를 중심으로 서울에 접객업소 10개소, 인천에 댄스홀 12개소, 부산에 댄스홀 2개소 등을 미군 위안시설로 지정하고, 피고와 미군이 공동으로 성병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이들 시설에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성병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산하 보건사회부는 관리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54.2.2. 법률 제 308호로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제정 및 시행하였으며 같은 날 대통령령 제1257호로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제정 및 시행하였다. 구 전염병예방법 제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성병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사람으로 ‘위안부’를 명시하고, 1주 2회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였다.

2) 1960년대 : ‘특정지역’ 설치 및 관리 등

가) 피고는 유엔에서 1950.3.21. 체결된 ‘인신매매금지 및 타인의 매춘행위에 의한 착취금지에 관한 협약’(이하 ‘인신매매금지협약’으로 줄여 쓴다)에 가입하고 1962.5.14. 조약 제933호로 이를 발효하였다. 인신매매금지협약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타인을 합의여부에 불구하고 소개하거나 유혹 또는 유괴하는자, 합의여부에 불구하고 타인의 성매매 행위를 착취하는자, 성매매 장소를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또는 그에 필요한 재정을 의식적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제공하는데 관여한 자 및 타인의 성매매를 목적으로 가옥이나 장소 또는 그 일부를 대차 또는 제공한 자를 처벌하여야 한다’(제1 내지 4조), ‘각 계약당사국은 성매매 행위에 종사하거나 또는 종사한다는 요의를 받는 자들이 특별등록, 특별문서의 소유 또는 감독과 통고에 관한 특별한 요건에 따르도록 하는 취지를 규정한 모든 현존 법규 또는 행정규정을 폐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합의한다’(제6조) 라는 취지를 정하고 있다.

나) 또한 피고는 1961.11.9. 법률 제771호로 구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제정 및 시행하여 성매매를 금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1962년 내무부, 법무부, 보건사회부의 공동지침으로 성매매영업이 가능한 104개 ‘특정지역’을 설치 및 관리하였다.

라) 이렇게 설치된 ‘특정지역’은 구 식품위생법(1962.1.20. 법률 제1007호로 제정, 1962.4.21. 시행) 및 구 전염병예방법 등에 의하여 관리되었다.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은 유흥영업종사자로 하여금 ‘유흥영업종사자등록증’과 ‘보건증’을 발부받도록 하였고, 구 식품위생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1962.6.12. 각령 제811호로 제정 및 시행) 제10조 제1항 제36호는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업'에 보건사회부공고 제1063호로 특수음식점을 포함시켜 그 시설기준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또 전염병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위안부에 대한 정기적 성병검진이 의무화되었다.

마) 보건사회부는 보건소를 통해 성병을 관리했는데, 보건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는 기타 의료기관에 성병관리를 전담하도록 대용진료소를 지정하였다. 위안부들은 단속에 걸리지 않으려면 보건소에 등록하고 월 2~8회 검진을 받아야 했다. 비감염자로 판명되었을 때는 '건강증'에 도장을 받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건강증을 압수당했으며, 경찰은 보건사회부의 관리정책에 협조하여 건강증 없이 영업을하거나 성병검진을 기피하는 여성들을 단속했다. 이후 피고는 위안부들을 '지역재건부녀회'에 가입시켜 등록하도록 하였다가 정부 주도의 재건국민운동이 해체되면서 위안부 등록은 자치회인 '자매회'가 담당하는 것으로 변경하였고, 보건증을 일원화된 카드제인 '검진증'으로 바꾸었다.

바) 검진증을 발급받은 위안부는 매주 검진을 받아야 했고, 감염자로 판명되면 낙검자 수용소로 보내져 강제치료를 받아야 했다. 등록과 성병검진을 기피하는 여성들에 대한 피고와 미군의 합동 단속이 수시로 실시되었는데, 피고 측에서는 보건소 직원과 자매회가, 미국 측에서는 S-5(민사과) 미군이 주로 참여하였다. 그 외에도 보건소와 경찰이 주도하는 단속(이른바 '토벌')과 성병에 걸린 미군이 자신과 성매매를 한 상대 여성을 지목하는 미군의 '컨택'(Contact tracing, 접촉자 추적조사) 등이 수시로 실시되었다. 이처럼 성병에 감염된 미군으로부터 상대방으로 지목된 위안부는 검진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낙검자 수용소로 보내져서 강제수용 상태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3) 1970년대 : 기지촌 정화운동

가) 피고는 1969년부터 '기지촌 정화운동'을 추진하여, 1971.12.22. 기지촌정화위원회를 발족하고 1972.2. '기지촌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나) 기지촌 정화운동 중 '성병관리정책'은 성병 교육과 의무적인 성병 검사, 엄격한 접촉확인 체계의 제정과 강화로 구성되었다. 미군이 그 숫자를 기억하였다가 의료 당국에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지촌 여성들은 가슴에 번호 또는 영어로 쓰인 명찰이나 보건증을 착용해야 했다.

다) 1974년경 보건사회부가 작성한 '1974년도 사업지침 전염병관리'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보건소장은 위안부, 밀창, 땀사, 접대부 등(전염병예방법 제9조 및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4조에 규정된 자. 보사부령 제242호 규정에 의한 특수업태부)을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전원 보건소에 등록 조치하고 검진증을 교부한다.

라) 피고는 1969.2.22. 보건사회부령 제242호로 '성병검진규정'을 제정하여 같은 날 시행하였다.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4조가 구 전염병예방법 제8조 제2항의 건강진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반면, 성병검진규정은 구 전염병예방법 제9조의 강제적 건강진단을 상세하게 정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특수업태부'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 강제 성병검진과 치료를 실시하고 그 실적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

마) 피고는 1978.5.25. 보건사회부령 제596호로 성병검진규정을 '성병검진규칙'으로 전부 개정하면서, 기존에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던 강제건강진단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4) 1980년대 이후 : 기지촌 주변 종합개발계획

1980년대 이후에도 피고 산하 보건사회부는 성병진료지침을 하달하여 위험집단(특수업태부를 명시)을 중심으로 강제검진과 치료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피고 산하 내무부는 1984년 기지촌주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외국군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출국할 수 있도록’ 환경을 쾌적하게 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기지촌 환경 개선 사업을 시행하였다. 다만 한미협정에 의한 전염병감독대책 일환으로서의 성병진료소의 기능은 점차 저하되었고, 성병관리소에서 수용이 아닌 통원치료를 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2.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판단

1. 기지촌의 조성, 관리 및 운영과 성매매 정당화 및 조장에 대한 판단

1) 1950년대

가) 피고 산하 보건부는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경 ‘청소 및 접객영업 위생사무 취급 요령 위생사무 추가지시에 관한 건’이라는 공문(갑 제133호증)을 작성하였다. 여기에서는 ‘위안부’를 ‘위안소에서 외국을 상대로 위안 접객을 업으로 하는 부녀자’라고 정의하면서 일반적인 ‘댄사’나 ‘접대부’와 별도로 개념짓고 있다. 1955.9.5. 국무회의록(갑 제134호증)에도, ‘밀매음을 단속하는 방법으로 특정지역을 설정하고, 동 구역에는 공개 외국인용 댄싱홀을 하도록 하라.’ 라는 대통령의 법무 분야에 관한 훈시사항이 담겨 있다.

나) 피고 산하 보건사회부, 내무부, 법무부 장관은 1957.7.6.경 ‘유엔군 출입 지정 접객업소 문제 및 특수 직업여성(속칭 위안부)들의 일정지역에로의 집결문제’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1957.2.28.부터 구 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제정 및 시행함으로써 피고 산하 보건사회부로 하여금 특수 접객업에 종사하는 여성들, 특히 위안부를 의무적 건강검진 대상으로 삼았다. 1961.6.30. 경기도가 작성한 공문에 의하더라도, ‘유엔군을 상대로 하는 특수 음식점에 대하여는 그 특수성(유엔군과 이를 상대로 하는 댄사 또는 접대부만이 출입하는 등)에 비추어 보건증과 아울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검진)을 받아야 한다(전염병예방법 제8조, 제24조, 동 시행령 제4조 참조).’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2) 1960년대

가) 1960년대에 들어 피고는 성매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구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제정 및 시행하고 인신매매금지협약에 가입하는 한편으로, 1962.6. 보건사회부, 법무부, 내무부 3부의 공동지침으로 32개 기지촌을 비롯한 국내 총 104개소에 성매매 영업이 가능한 ‘특정지역’을 지정하고 위 특정지역 내 성병감염자 및 성매매여성 등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특정지역의 설치 목적은 ‘윤락지역을 일반인 거주지역으로부터 격리시켜 시민들의 풍속과 교육에 미치는 악영향을 희석시키고, 윤락녀들의 집단화를 유도함으로써 이들 스스로가 포주로부터의 착취를 자발적으로 방어하며, 효율적인 성병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나) 피고 산하 보건사회부에서 1987년 발간한 ‘부녀행정 40년사’(갑 제8호증)에는 당시 피고의 정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미군정 당시 부녀자의 인신매매 또는 매음행위를 불법화시켰으며 매개자의 처벌을 규정하였으나 그 운용에 있어서 선도책이 없는 단속만으로 사실상 묵인상태에 있었으므로 창녀를 재활시켜 그간 사회에 적지 않은 물의를 가져왔다. 이에 1961.11.9.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제정 및 공포하여~1962.6.에 전국에 처음으로 104개소의 특정지역을 설치하고 선도에 임하였다~그 후 1970년에 특정지역을 폐지하였다. 윤락여성 선도보호를 위하여 선도위원회를 구성하고, 윤락여성정착지역을 설정하였으며, 수용보호소를 설치하여 직업보도,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였다.’

바) 피고는 1962.11.경부터는 지역재건부녀회에 등록된 위안부 1만 640명을 대상으로 정신, 미용, 위생, 간단한 영어 회화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피고는 미군과 함께 정기적으로(주로 월 1회, 미군의 성병 발병률이 증가하는 때에는 월 2회 시행되기도 함) 미군 위안부들을 기지촌 내 주요 클럽과 같은 장소에 모아 놓고 교육을 시행하였는데, 이 교육에는 미군부대에서 나온 미군 의무부대 장교, 보건소 직원, 경찰서장, 군수, 자매회장, 관광협회장 등이 참석하였고, 미군 위안부들은 반드시 교육에 참석해야만 했다. 교육을 실시한 담당 공무원들은 위안부들이 외화로 벌어들이는 애국자라고 하는 한편, 위안부들에게 성병에 관한 보건 의료 지식을 전달하면서 성병 검진을 반드시 받을 것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담당 공무원들은 위안부들에게 ‘앉는 태도’ 즉 ‘가랑이 벌리지 마라. 다리를 꼬고 무릎을 세우고 이렇게 앉아라.’라는 등 미군 상대 성매매에 있어 위안부들이 취해야 할 태도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교육하였다. 한편 군수나 군청 관계 공무원, 관광협회장 등이 위안부들을 격려하면서 취업보장, 노후보장, 전용아파트 건립 등 혜택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사) 아울러 피고는 1961.8.경 관광사업진흥법을 제정하고, 1963년 위 법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기지촌에 있는 미군 상대 유흥시설인 ‘클럽’들은 ‘특수관광시설업체’로 지정되어 면세주류를 합법적으로 공급받았다.

3) 1970년대

가) 피고는 1971.12.22. ‘기지촌정화위원회’를 발족하였고, 1971.12.27. 대통령 행정비서, 외무부, 내무부, 법무부, 보건사회부, 국방부 등 각 부처 차관, 국무총리 행정비서 등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정화회의’가 열리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1972.2.경 ‘기지촌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1972.7.경 예산 11억 5,000만 원이 책정된 기지촌정화위원회 프로그램을 승인하고 위 위원회가 1975년까지 활동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기지촌정화의 내용으로는 크게 ‘기지촌 내 흑인 병사들에 대한 인종차별을 줄이는 것’과 ‘성매매 여성을 지역경찰과 보건소에 등록시키고 성병 검사와 치료를 하는 것’ 외에, 기지촌의 전반적인 환경 정화로서 도로 확장이나 업소의 위생설비 개선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 용산경찰서장 등이 1971.5.15. 위안부들에게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 ‘미군 접객업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에게’ 라는 제목의 공문(갑 제141호증)에서는, 당시 미군의 성매매업소 출입 제한의 해제 조치와 관련하여 위안부들의 협조를 당부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미군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일부~에게 불쾌감을 조장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과거의 일들은 반성하고 시정합니다. 그러한 사소한 사건도 여러분의 적들에게 유리하게 이용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점에서 볼 때,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적들을 돕고 있으며, 이로써 여러분~국내안보는 약화된다는 것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미군은 여러분을 도와서 대한민국을 북한의 침략과 파괴행위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한국에 와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도, 우리와 함께 당면 문제를 해결하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미군 등으로 구성된 ‘한미친선협의회’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으로 설치되었다. 1973.3. 춘천시에서 작성된 ‘한미친선 협의회 조례 공포’라는 제목의 공문(갑 제61호증)을 보면, 그 조례 초안 제3조 제2항에서 ‘공동관심사’로 ‘1. 주한미군을 고객으로 하는 접객업소의 서비스 개선, 내외시설 개선, 위생감독 2. 성병 보균자 및 업태부의 선도’ 등을 열거하고 있다.

4) 1980년대 이후

가) 피고 산하 내무부는 1984년 기지촌 주변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1986.12.경 기지촌 환경 개선사업은 전국 단위로 계획되어 1987년부터 1991년까지 5개년의 기지촌정비계획이 세워졌다. 주요 사업으로는 '① 주거환경 개선사업 : 아파트 건립, 연립주택 건립, 주택 개·보수, 상가정비 등, ② 기반시설 확충 : 도로개설 및 확·포장, 보도블럭, 가로등 시설 등, ③ 위생시설 개선 : 상·하수도 시설, 변소개량 등'이 있었다.

나) 경기도에서 1988.11.8. 평택군 등에 보낸 '89 도서·기지촌 사업계획 및 예산확보 지침 시달' 공문(갑 제36호증)에는, 기지촌 정비의 사업필요성에 관하여 '① 주한 외국인에 대한 대한국관을 개선 : 외국인군의 주둔과 함께 급격한 인구 유입에 의한 주변도시가 형성,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도시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음. ② 기지촌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의 개선으로 도시면모를 일신'이라고 적혀 있다. 또한 추진방침 중 하나로는 '외국인과 윤락여성 출입지역의 집단화를 유도, 일반주택가와 분리, 환경오염을 방지 : 외국인 위락시설이 일반주택가에 혼재, 지역주민의 정착의욕을 저해'라고 적혀 있다.

5) 원고들의 기지촌 유입 경위

한편 이 법원에 이르러 제출된 서증들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 내지 원고들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상담자들에게 구술한 내용이 담긴 면접보고서 등에는, 원고들이 기지촌에 유입된 경위에 관하여 상세히 적혀 있다. 그 유입 경위는 다양하나, 대체로 ① 무허가 직업소개소 등을 통하여 인신매매와 같은 불법행위의 피해자로서 기지촌에 유입된 유형과, ②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던 중 다른 생계수단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하고자 기지촌에 유입된 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 **성매매 중간매개·방조 내지 성매매 정당화·조장**

→ 피고의 담당 공무원 등은 기지촌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행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적극·능동적으로 원고들의 성매매 종사를 정당화하거나 이를 '조장'하였고, 이러한 행위는 윤락행위 금지를 규정한 구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규정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의무와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과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서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종합하면, 전국 기지촌의 운영·관리 전반에 걸쳐 위와 같은 성매매 조장·정당화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추인할 수 있다.

○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 **'애국교육'의 실시와 성매매 조장·정당화**

→ '애국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관련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처럼 위생, 미용 및 성병 감염 예방에 관한 내용이 교육 시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그 교육의 내용에는 분명히, 원고들을 비롯한 위안부들을 '외화를 벌어들이는 애국자'라고 치켜세우면서 성병검진의 중요성 등을 강조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가랑이를 벌리지 말라.'라든가 '다리를 꼬고 무릎을 세워 이렇게 앉아라.'라는 등으로, 통상 성매매업소 운영자나 포주가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시할 만한 사항들에 관하여 담당 공무원 등이 원고들을 상대로 이를 직접 교육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고위 공무원들까지 나서서 이러한 교육 자리에서 원고들에게 전용아파트 건립 등의 각종 혜택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적어도 이 사건 원고들의 경우, 추후 이와 같은 전용아파트 건립이나 노후 보장 등의 혜택을 실제로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들은 이 사건 기록상 찾을 수 없다.

결국 피고는 기지촌 내 성매매를 방지·묵인하거나 기지촌의 운영·관리를 위해 최소한도로

개입·관리한 데 그치지 않고, 이른바 ‘애국교육’의 실시 등을 통해 기지촌 내 성매매 행위를 능동적·적극적으로 조장·정당화하였다. 아울러 원고들 입장에서 본다면, 교육 과정에서 고위 공무원들이 전용아파트 건립 등의 각종 혜택을 약속하고도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실질적으로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기만당하였다고 생각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 **위법한 절차에 따른 성병치료와 성매매 조장**

→ 피고는 기지촌 운영·관리를 위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안부들의 성병 치료를 행함에 있어서, 법령에 별다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등 의료전문가에 의한 진단 등의 합리적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토벌’ 또는 ‘컨택’ 등의 이름 아래 원고들을 곧바로 ‘낙검자수용소’ 등의 강제수용 시설에 격리수용하거나 신체적 부작용이 클 수 있는 페니실린을 무차별적으로 투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원고들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였다. 이와 같은 위법한 성병치료가 행해진 데에는, 보건행정의 특성상 기지촌 내 성병 관리의 효율 및 엄격성을 기할 의도도 있었겠지만, 이와 함께 앞서 본 대로 위 원고들을 국가안보나 외화 획득에 활용하려는 목적, 즉 외국군들이 기지촌 내 성매매 과정에서 성병에 걸려 신체적 건강이나 정신적 사기가 저하되는 현상이 급증하면 이로 인해 외국과의 군사적 동맹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안보 또는 기지촌 주변 성매매의 활성화를 통한 외화 획득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외국군의 성매매 상대방이었던 위안부들의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등한시한 채 기지촌 내 성병의 근절과 감소에만 치중한 데에 그 원인이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미 교수는, 외국군 상대 성매매와 관련성이 없거나 희박한 내국인 상대 성매매집결지에서는 기지촌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던 토벌이나 컨택 등을 통한 성병감염인 조사·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이 또한 위와 같은 위법한 성병 치료행위의 목적·의도를 뒷받침하는 한 가지 사정으로 볼 수 있다. 결국 피고가 행한 위법한 성병치료 행위는 앞서 본 적극적인 성매매 정당화·조장행위와 동전의 양면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 종합적 검토

지금까지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담당 공무원 등은 ‘애국교육’의 실시, 위법한 절차에 따른 성병치료 행위를 통하여, 외국군 상대 성매매를 정당화하거나 조장함으로써 외국군의 사기를 진작·향상시키는 한편 기지촌 내 성매매 활성화를 통해 외화를 획득한다는 의도로 기지촌을 운영·관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기지촌 운영·관리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와 같은 피고의 성매매 조장·정당화 행위는 구 윤락행위방지법 제4조가 정하였던 윤락행위의 금지 규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인권존중 의무를 위반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현저히 결여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피고가 ‘특정지역’ 지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반되기 마련인 소극적인 성매매의 방치·묵인이나 필요한 한도 내에서의 관리 행위를 넘어 능동적·적극적으로 성매매를 정당화하거나 조장한 행위, 그리고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로서 별다른 법령상 근거도 없이 원고들을 강제로 격리수용하여 성병을 치료한 행위는 그 어떠한 명목으로도 면책될 수 없기 때문이다.

피고의 기지촌 운영·관리가 이루어지던 당시에 한미 군사동맹의 중요성이 지대하고 이를 통한 국가안보 보장이 으뜸가는 국가적 과제였다는 점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는 기지촌 운영·관리에 있어 적극적으로 외국군 상대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함으로써, 원고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나아가 성(性)으로 표상되는 원고들의 인격 자체를 국가적 목적 달

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어느 누구도, 특히 국가는 한 인간의 인격이나 인간적 존엄성에 관한 본질을 침해하고 이를 수단으로 삼아 국가적 목적의 달성을 꾀해서는 안 된다. 헌법 제 10조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선언하는 한편 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 것이나,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안전보장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정하는 것도 그와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지금과 비할 수 없이 곤궁하던 시기였기는 하지만, 국가가 기지촌에 성매매 관련 종사자들이 모여든 것을 기화로 위안부의 성(性)을 상품화하여 외화 획득을 도모한다는 것 또한 명백히 위법한 것이므로,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인권존중의무를 위배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으로 피고가 기지촌 조성·운영·관리를 위해 1950년대부터 위안부의 일정지역 집결문제에 관한 합의, 위안부에 대한 보건증(검진증) 발부·위안부 등록제 및 건강검진 의무화, ‘특정지역’ 지정, 기지촌 종합대책 및 기지촌 주변 종합개발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왔고, 이를 통해 외국군 상대 매춘여성의 급증에 따른 성병 관리, ‘특정지역’ 지정 등을 통한 일반인 거주지역으로부터 윤락지역의 격리, 풍속·교육상 악영향의 방지 및 지역사회 환경개선 등을 도모하고자 하였음은 앞서 본 해당 정책의 관련 공문 등에 드러나 있다. 기지촌 조성이나 관리·운영 당시의 경제·사회적 현실이나 제반 여건을 고려하면, 이러한 거시적 정책의 수립 자체가 행정재량의 범위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의 담당 공무원 등이 군사동맹 강화나 외화 획득을 위해 원고들의 성(性)을 동원하겠다는 위법한 목적·의도 아래 성매매를 조장·정당화함으로써 인권존중의무를 위배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방식으로 그 직무를 집행하였던 이상, 피고의 기지촌 운영·관리 행위에 성매매 종사자들 집결을 통한 일반 국민들의 풍기 단속이나 적정한 기지촌 내 성병 관리 등의 합목적적 의도 또한 담겨져 있다는 점은 뒤에서 보듯이 국가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한 가지 사정이 될 수 있을 뿐, 이러한 사정만으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하였던 원고들은 기지촌 운영·관리 과정에서 피고의 담당 공무원 등이 행하였던 위법한 성매매 정당화·조장 행위로 인해 그들의 인격권 나아가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당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피해는 이 사건 원고들 모두에 공통된 손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조직적·폭력적 성병 관리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들을 비롯하여 등록된 위안부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건소, 성병진료소 등에서 성병검진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였던 사실, 각 진료소 검진에서 탈락하면 보건소 직원 등에 의해 이른바 ‘낙검자수용소’ 등의 치료시설로 보내진 후 강제 격리되어 완치판정을 받을 때까지 수용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① 성병에 감염된 것으로 검진 결과가 나온 위안부들뿐만 아니라, 미군으로부터 ‘컨택’ 즉 성병을 옮긴 성매매 상대방으로 지목당한 위안부들, 그리고 ‘토벌’ 당시 보건증(패스)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거나 이를 소지하였더라도 정기 성병 검진을 받았다는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위안부들까지 곧바로 낙검자수용소 등으로 끌려가 강제로 격리수용되었다(경우에 따라 보건소, 경찰서 내 유치장 등으로 다양하다).

② 수용된 위안부들은 완치 판정을 받을 때까지 수용소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이에

수용소를 탈출하려고 시도하다가 부상을 입는 위안부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낙검자수용소에 수용된 위안부들에게는 치료로서 페니실린을 주사하는 방법이 쓰였다. 위안부에 따라서는 페니실린 쇼크로 인한 부작용에 시달리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페니실린 쇼크사고가 발생하면서 의사들이 투약을 꺼리자, 보건사회부는 1978.2.경 페니실린 투약으로 인한 쇼크 사고를 수사하는 검찰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면 면책될 수 있도록 하고, 수사를 신중하게 해 달라.'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이에 응하는 취지의 회신을 받기도 하였다(갑 제27 내지 29호증).

④ 낙검된 위안부들에게 투여된 페니실린에 관하여,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의정부 보건소에서 의무사무관(의사)으로 근무하였던 제1심 증인 문정주는, '성병균이 발견되면 벤자틴 페니실린이라는 약을 처방하였다. 이 약은 며칠 동안이나 근육주사로 투여를 해야 하고, 저렴하고 효력이 강해서 각광을 받기는 했지만, 갖은 쇼크의 원인이 되는 부작용도 있는 약이었다. (본인이 진료를 하던) 그때도 이미 쇼크사 때문에 의사들로서는 회피하는 약이었는데, 그 약을 썼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의사 등 의료전문가의 진단 없이 성병의심자에 불과한 위안부들을 곧바로 낙검자수용소 등에 격리수용한 경우, 즉 ① '토벌'이라 이름 붙여진 합동 단속 당시 보건증(패스)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이를 소지하였더라도 정기 성병 검진 도장이 찍혀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자를 곧바로 격리수용한 행위, ② 외국군이 성병을 옮긴 성매매 상대방으로 지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의료 진단 없이 대상자를 격리수용한 '컨택'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 여전히 법령상 근거 없이 행해진 강제수용 내지 사실상의 구금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① 법령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았던 1977.8.19. 이전에 이루어진 강제 격리수용행위는 사전에 의료 진단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위법하고, ② 격리수용에 관한 법령의 근거가 마련된 1977.8.19. 이후의 강제 격리수용행위라 하더라도, 의료 진단 없이 곧바로 이루어진 강제 격리수용조치는 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헌법이 정하는 법률에 의한 체포·구속과 죄형법정주의 및 적법절차보장(제12조 제1항 본문), 법관리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구속(제12조 제3항),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인(제12조 제4항), 구속이유의 고지(제12조 제5항) 등 신체의 자유에 관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신체적·정신적 손해와도 상당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 및 갑 제87, 126, 13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추론할 수 있는 아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토벌' 내지 '컨택'을 통하여 의사의 진단 없이 원고들을 낙검자수용소 등에 강제로 격리수용하여 치료한 행위는, 형상적 법령에 위반되었다는 점과 별도로, 공무원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인권존중의무 등에 위반하고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는 면에서도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행정재량과 헌법상 비례의 원칙

기지촌 내의 성병 관리가 긴요한 정책 사안이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성병 감염의 통제나 이를 통한 보건·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들에는 일정한 재량의 한계가 있다. 즉 대상자인 기지촌 위안부들을 상대로 성병 감염 여부를 진단·확인·치료하는 데에 있어 국가로서는 앞서 본 형식적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을 시행할 때에는, 목적 달성에 유효·적절하고(목적의 정당성), 가능한 한 최소한도의 침해를 가져오며(침해의 최소성),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안 된다는(법익의 균형성)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

원 1997.9.26. 선고 96누10096 판결 등 참조).

2) 침해의 최소성

가) 피고는 위안부 등록제 및 보건증(검진증) 내지 ‘패스’ 발급, 그리고 의무적·정기적 건강검진 등을 통하여 기지촌 내 위안부의 성병 감염 여부를 조기에 발견·치료하고자 하였고, 이는 앞서 본 대로 피고가 당시의 제반여건을 고려한 행정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담당 공무원들이 ‘토벌’이라는 합동 단속을 통하여 의무화된 보건증(패스)의 소지 여부나 그 증서를 통하여 정기 검진 여부를 확인한 조치 그 자체는 앞서 본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 등이 보건증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보건증 등에 정기 검진 도장이 없는 위안부들에 대하여, 성병관리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행정벌 등의 제재를 가하거나 일응 성병의심자라고 판단하여 앞서 본 강제적 건강진단 조항에 따라 의사 등 의료전문가에게 성병 감염 여부를 진단하도록 하는 대신, 곧바로 낙검자수용소 등의 치료기관에 격리수용한 행위는, 위와 같은 형식적 법령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성병 관리·치료라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가능한 한 최소한도의 기본권 침해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는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컨택’을 통해 선별된 위안부들을 곧바로 격리수용한 행위 또한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비추어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외국군이 성병에 감염된 후 관계 공무원에게 성행위 상대방을 특정하기만 하면, 별다른 감염 여부의 진단도 없이, 그리고 지목된 위안부에게 성병 감염 여부에 대한 아무런 소명의 기회도 없이 해당 위안부를 곧바로 낙검자수용소 등에 격리수용하였기 때문이다. 갑 제122호증의 31, 갑제131호증의 2에는, 격리수용된 이후 자신을 성행위 상대방으로 지목했던 미군이 찾아와 ‘내가 너를 지목하였다. 의무대에 상대 여성이 누구였는지 말해야 하는데 생각나지 않아 아무나 지목했다.’라며 사과하였다는 구체적 경험이 생생하게 진술되어 있기도 하다.

다) 매독 등 성병에 감염된 환자에게 페니실린 투약이 원칙적 치료방법이라는 점은 피고 주장이나 2016 성매개감염 진료지침(을 제7호증)의 내용과 같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성병에 감염된 것임이 의료전문가의 진단으로 판명된 ‘환자’에 대한 치료방법이라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담당 보건소 공무원 등은, ‘토벌’이나 ‘컨택’ 등의 계기만으로 낙검자수용소 등에 끌려온 위안부들을 상대로 이와 같은 성병 확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페니실린을 그 수용자들에게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페니실린이 단시간 내에 성병을 치료할 수 있는 효과 좋은 약이라 하더라도, 단지 보건증 미소지 또는 보건증상 정기검진 도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토벌’의 경우), 또는 성병에 걸린 성매매 상대방으로 지목당하였다는 이유만으로(‘컨택’의 경우) 아무리 행정재량을 넓게 인정하더라도 ‘성병의심자’에 불과하였던 위안부들에게 갖은 쇼크의 부작용을 안고 있는 페니실린을 일률적으로 투약한 것은 신체의 자유 내지 건강이라는 위안부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봄이 마땅하다.

3) 목적의 정당성

이와 같이 법령상 근거가 희박할 뿐 아니라 위안부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방식의 강제 격리수용행위가 일상적으로 행하여졌던 것은, 기지촌 내의 효율적이고 엄격한 성병관리 및 이를 통한 보건의 향상 자체에도 목적이 있겠지만, 이와 함께 제3항에서 본 대로 외국군의 사기 진작·양양과 이를 통한 군사동맹 강화, 그리고 기지촌 성매매 활성화를 통한 외화 획득에도 그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즉, 피고는 외국군이 안심하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기지촌 내 성병 감염자를 ‘색출’할 목적으로 (위안부 등록제나

보건증 발부 및 정기적·의무적 건강검진 등의 조치에 더하여) ‘토벌’이나 ‘컨택’ 등의 방법으로 성병의심자를 선별한 뒤 별다른 진단절차도 없이 곧바로 격리수용 조치를 행한 면도 있다고 추인할 수 있다. 외국군 상대 성매매업소와 관련성이 희박한 내국인 상대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에서는 위와 같은 ‘토벌’이나 ‘컨택’ 등을 통한 격리수용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 그리고 폐니실린 과민성 쇼크 사고처리에 관하여 보건사회부가 법무부에 최소한의 응급처치 등을 전제로 의사 책임의 면책을 요청한 공문의 내용 등은 위와 같은 피고의 의도나 목적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격리수용행위는 앞서 본 대로 어떤 이유로도 면책될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격리수용행위에는 그 목적의 정당성 또한 결여되어 있다.

4) 법익의 균형성

이와 같은 피고의 강제 격리수용행위가 기지촌 내 성병의 엄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라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였다하더라도, 성병 감염 여부에 대한 의료전문가의 진단 없이 위안부들을 강제로 낙감사수용소 등에 격리하고 이들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폐니실린을 투약한 것은, 그로 인해 위안부들 개개인의 신체적 자유 등 기본권의 침해 정도가 위와 같은 행정적 목적이라는 공익을 넘어선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종합적 검토

1)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피고 소속 또는 기관위임사무를 담당하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담당 공무원들은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형식적 법령 또는 인권 존중의무를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국가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한 판단

가. 위자료의 결정

지금까지 살펴 본 대로 피고의 담당 공무원 등이 주둔 외국군의 사기를 진작·향상하고 의화를 획득한다는 의도 아래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함으로써, 기지촌 위안부였던 원고들은 그들의 기본적 인권인 인격권, 넓게는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당하였다.

나아가 원고들의 경우 별다른 법령의 근거나 의료전문가의 진단도 없이 국가기관에 의해 불법 수용되어 무차별적 처방에 따른 부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로 인해 위 원고들의 경우 위와 같은 성매매 정당화·조장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더하여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기지촌 관리·운영 과정에서 벌어진 원고들에 대한 성매매 정당화·조장행위나 진단 없는 강제 격리수용 치료 조치 등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당하고 적법한 국가의 행위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오히려 원고들은 성매매 여성으로 취급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왔다. 그 밖에 국가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권적 행위라는 불법행위의 중대성, 불법행위가 일어난 시대적 상황, 이 사건 각 불법행위시와 현재의 통화가치 사이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경기도의회 공고 제2018- 58호

경기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미군 위안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 3. 19.

경기도 미군 위안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군사안보가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이면서 정부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위해 이미 불법화된 성매매행위를 조장·방조·묵인·허용하였음.
- 당시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촌 성매매를 조장하고 방조함에 따라 주한미군기지촌 여성들은 강제 검진·구금·구타 및 인신매매와 착취 등의 인권침해를 당해야 했음.
- 주한미군 기지촌의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 있었으며, 현재 도내 거주하고 있는 기지촌 여성들은 대부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조례안은 경기도 차원에서 미군 위안부 여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의 주거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미군위안부의 명예회복과 복지향상 및 도민의 성인지적 역사인식 정립 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나. 경기도민군위안부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

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지원신청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에서 안 제12조까지).

라. 미군 위안부 명예회복 및 치유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경기도 미군 위안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1945년 9월 8일 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한 이후부터 2004년 9월 23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경기도 내 미군 위안부의 실태 및 인권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주거 및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미군 위안부의 복지향상과 인권증진을 도모하고 경기도민의 성인지적 역사인식 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미군 위안부”란 국적에 관계없이 경기도 내 미군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을 말한다.
2. “경기도 내 미군 기지촌”이란 미군을 상대로 한 주류 판매·유흥행위 및接客행위의 영업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소가 밀집하여 있었던 지역으로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여구역 및 동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여구역 주변지역과 미군이 주둔하였던 지역 또는 그 일부가 생활하였던 지역 중 경기도 내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군 위안부의 명예회복과 복지향상 및 도민의 성인지적 역사인식 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미군 위안부의 실태 및 인권피해 사례를 조사하기 위하여 조직과 예산을 확보하고,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공·협조하여야 한

다.

제4조(경기도미군위안부지원위원회) ① 미군 위안부의 실태조사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 미군 위안부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위원의 수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위원은 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미군 위안부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2. 미군 위안부 지원에 관한 사항

3. 미군 위안부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미군 위안부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성인지적 역사인식 정립에 관한 교육·홍보 사항

5. 미군 위안부의 인권보장 및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미군 위안부 자녀의 생활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와 지원에 관한 사항

7. 미군 위안부 지원기관의 지정과 운영 및 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미군위안부 명예회복과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무위원회 등) ① 도지사는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무위원회를 대신하여 미군 위안부 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지원기관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경기도 소재 주한미군기지 지역에서 성매매에 종사한 기지촌여성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경기도미군위안부지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 사람으로 한다.

제8조(지원내용) ①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1. 임대보증금 지불,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등 주거 지원
 2.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3. 치료, 간병, 보조 장구 사용 등 의료비 지원
 4. 장례비 지원
 5. 미군위안부의 명예훼손·손해배상 및 국적회복 등에 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 지원
 6. 그 밖에 미군 위안부의 명예회복·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 ②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의 선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원신청) ①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드러날 경우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고, 관련 민간단체에 지원대상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당사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선정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하며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지원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관계인의 구체적 범위와 증서교부 등 지원대상자 신청 및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재심의) ① 제12조제1호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중지 및 환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지원대상자가 지원받기를 거절한 경우

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의 지급을 받았거나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2조(권리의 보호) 의료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 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13조(명예회복 및 치유사업) 도지사는 미군 위안부의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동일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며,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지촌 기록관 등 교육시설 조성

2. 피해자와 자녀의 심리 치료 사업

3. 그 밖에 미군 위안부의 명예회복·치유 및 도민의 성인지적 역사인식 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4조(민간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미군 위안부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비밀 보장) 미군 위안부에 관한 모든 정보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최대한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